

2021년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단체교섭 합의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북지역금속산업사용자(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2021년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단체협약

① 협약의 우선 적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전북지역 금속산업사용자가 맺은 지부협약은 조합과 지부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노동자를 적용범위로 하며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 및 사업장 단체협약보다 우선한다. 다만, 사업장 단협에 이미 확보되었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중앙 사용자 협의회에 가입한 사업장은 본 협약을 당연 적용한다.)

② 사업장 단협 체계정비

1) 사업장 단협의 장, 절 체계 정비를 통일한다.

2) 사업장 단협 유효기간

사업장 단협 유효기간이 2년인 사업장은 짝수년도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맞춘다.

③ 조합 활동 보장

1) 전북지역 금속산업사용자(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금속노조 전북지부 각 부서, 위원회 회의 및 수련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비상근 간부(지회 및 분회)들에 대해 유급 시간할애를 보장한다. 단, 전북지부는 소속회사에 3일전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전북지역 금속산업사용자(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노조 및 지부 임원선거 기간 동안 임원 후보의 유급상근을 보장한다.

3) 전북지역 금속산업사용자는 금속노조 전북지부 소속 각 사업장 조합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조합원 자녀의 대학입학금(입학 축하금)으로 연 50만원을 지급한다.

단, 지부에서 합의한 금액을 상회하는 지회 또는 분회는 기존 지원 사항을 유지한다.

④ 자율교섭 보장

전북지역 관계사용자는 복수노조 시 노사가 합의하는 자율적 교섭 방식을 준수한다.

⑤ 직장폐쇄 남용금지

전북지역 관계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파괴할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하지 않는다.

⑥ 지부 전임자 처우보장

전북지역 금속산업사용자(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조합원이 상급단체(민주노총 총연맹, 전북본부) 및 금속노조(본조, 지부)의 임원으로 피선되었을 시 추가전임을 인정하며, 추가 전임자의 임금은 해당 사업장 지회장(분회장)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사업장 단협이 지부 합의안보다 상회 할 경우 사업장 단협을 우선 적용한다.

⑦ 지부 교섭위원 활동보장

전북지역 금속산업사용자(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금속노조 전북지부 교섭위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당해연도 노-사 상견례부터 조인식 까지 임시 전임을 보장한다.

⑧ 전북지부 총회시간

전북지역금속산업사용자(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전북지부 조합원총회를 연 4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⑨ 안전보호 장구

- 1) 회사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 장구를 지급해야 한다.
- 2) 안전보호 장구를 지급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지급기준, 품목 등을 심의, 결정하고 노사합동으로 검수한다.
- 3) 회사는 충분한 물량의 안전보호 장구를 확보하며 교체 및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4) 안전보호구 의무착용 지역 및 작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⑩ 작업환경측정

- 1) 회사는 조합의 입회하에 년 2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며, 작업환경 측정기관은 전북지부에서 추천한 2곳에 대해 각 사업장 노-사 공동기구에서 선정하여 실시한다. 단, 각 회사는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 2회에 연속노출기준 미만일 경우 작업환경 측정을 1년1회에 한한다. (본 항중에서 산안법보다 저하된 내용은 산안법을 우선 적용한다.)
- 2)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실시 전 측정기간, 방법, 항목, 장소 등에 대한 계획서를 조합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환경측정 예비조사 및 조사를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한다.
- 3) 작업환경 측정 실시 후 그 결과를 문서로써 조합에 통보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⑪ 건강진단

- 1) 회사는 WHO 또는 국가에서 지정한 신종 전염병 발병시 노동자들에게 무상으로 백신접종을 제공하며, 의료기관의 확진 판정시 공휴일 포함 7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기타 제반 사항은 각 지회(분회)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2) 회사는 조합의 입회하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건강진단 실시기관은 전북지부에서 추천한 2곳에 대해 각 사업장 노-사 공동기구에서 선정하여 실시한다.
- 3) 회사는 검진 방법, 검진 항목, 검진 시기등 검진과 관련한 제반의 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조합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검진예비조사 및 검진을 조합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 4) 건강진단 실시 후 그 결과를 문서로써 조합에 통보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⑫ 건강권 보호

회사는 조합원의 산재요양 신청시 근로복지공단(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제출서류 중 사업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⑬ 유해 화학물질 취급

- 1) 회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적정 제어풍속을 유지한다.
- 2) 회사는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관리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한글로 된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법적 요건에 맞게 작성하여 작업장에 게시, 비치하고 취급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전북지역 금속산업 사용자는 근, 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업체 선정시 지회, 분회와 충분히 협의한다.

⑭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 1) 사망사고(중대재해) 발생시 전북지부 집단교섭 참여 사업장의 해당사업장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2주일이내 2시간의 안전교육(의무교육시간 외)을 실시한다.
- 2) 회사는 법정안전교육시간 중 1년에 2회 4시간 조합주관교육을 사내에서 실시함을 인정한다. (단, 일정 등은 노사협의하며 제반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⑮ 급식

전북지역금속산업사용자(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을 친환경 농, 축, 수산물 등으로 제공한다.

⑯ 문화체육행사 지원

전북지역 금속산업사용자(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연1회 전북지부에서 주최하는 문화체육 행사에 교

통편의를 위해 버스 3대분의 비용을 지원한다.

⑰ 지역경제 활성화

전북지역 금속산업사용자(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노동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재래시장 상품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해당지회(분회)와 합의 하여야 한다.

⑱ 유사산 휴가 및 여성권익보호

1) 회사는 유사산 또는 사산한 여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 16주 이하 : 의사 소견서에 의해 7일까지 인정
- 16주 이상 : 관계법령에 따른다.

이 조항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전북지역 금속산업사용자는 소속 조합원 배우자의 유사산 또는 사산시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한다.

단, 소속 사업장의 단협이 상위할시 해당 사업장 단협에 따른다.

3) 여성의 날과 관련한 내용은 추후 집단교섭에서 논의한다.

⑲ 전북지부 취약계층 제조업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공헌기금 마련 요구

1) 전북지부 관계사용자와 전북지부는 전북지역 실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회공헌 기금을 마련한다.

2) 사회공헌기금은 전북지역 관계사용자가 월 620만원을 출원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노사 동수의 인원으로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단, 위원장은 조합측에서 맡는다.

⑳ 제규정 개정

1) 전북지역 관계 사용자는 취업규칙,사규 등 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단체 협약을 준수한다.

2) 전북지역 관계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㉑ 임금체계 개편 임금저하금지

1) 전북지역 관계 사용자는 임금 체계를 개편하려 할 때 사전에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 실시한다.

2) 전북지역 관계 사용자는 조합원의 임금체계 개편 시,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저하 하지 않는다.

㉒ 공민권 행사 보장

1)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청구하면 이를 수용하며,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 또는 일수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기타 각종 병역의무를 수행할 때
2. 공적인 업무로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수사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출두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 공적인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2) 예비군 훈련 또는 민방위 훈련을 받을 때 각 회사별 단체협약에 따른다.

3) 병역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을 때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전복이의 지역일 경우 1일을 추가한다.

㉓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

회사는 산별임금체계 및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전국단위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를 금속노조와 함께 2018년 10월까지 구성한다. 세부 운영방안은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한다.

㉔ 고용보장

회사(전북지역 금속산업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 한다. 다만,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고용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㉕ 위험성평가

① 회사는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매년 노동조합과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산업재해 감소 대책을 수립한다.

② 회사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노·사동수가 참여하며, 조합 측 인원에 대한 회의 참석 시간 및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단, 위험성평가 실시기구,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합의로 정한다.

㉖ 전염병 발생시 대책

① 회사는 사업장 내 직원 및 출입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새롭게 정부가 지정하는 전염병 중 즉각적인 격리와 관리가 필요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근무부서를 포함한 인근 부서의 작업을 중단하고 즉시 정부 대응 지침에 따른 조치를 취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소집하여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단, 작업중단은 필수유지 사업장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위 질병에 대한 사업장내 노동자 또는 노동자의 동거 중 전염병 확진자 및 확진의심자, 접촉자가 발생할 시 국가가 지정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해당 노동자에게는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무급

휴가, 연차 강제로 소진 등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할 수 없다.

③ 2항의 노동자가 현장에 복귀할 시 기존 노동조건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④ 위 질병으로 인해 원청사를 포함한 거래업체의 물량 부족, 원료 및 자재수급 부족으로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 공정에 불가피하게 휴업을 하는 경우, 해당기간에 해당 조합원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㉗ 산업전환협약

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과 회사는 디지털화·자동화·전동화 및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시기 회사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과 고용안정,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투명한 경영전략을 기반으로 책임성 있는 산업전환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실행한다.

② 제 1항과 관련한 의제와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확보
2. 신기술 도입 관련 직무 교육·훈련
3. 노동안전 및 인권보호
4. 기후위기 대응
5. 공정거래

③ 조합과 회사는 구체적인 산업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기구를 2022년 상반기부터 운영하고 세부방안은 사업장별로 정한다.

④ 조합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및 회사는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노사를 넘어 정부가 함께하는 산업·업종·지역별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며, 산업전환에 따른 위기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보호할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한다.

2. 2021년 전복지부 임금인상안

- 기본급 8,000원을 인상한다.

단, 추가인상분 및 세부사항은 해당 사업장 보충교섭에서 논의한다.

2021년 10월 28일(목)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호규 (인)		전북지역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대표교섭위원 최웅정 (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지역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북지부 지 부 장	차덕현 (인)	타타대우상용차(주)	최웅정 (인)
전북지부 수석부지부장	전충백 (인)	(주)아이에스테크	이영주 (인)
전북지부 사무국장	황이택 (인)	(주)서연인테크	남정환 (인)
익산지역금속지회 지 회 장	권성대 (인)	일진머티리얼즈(주)	정기남 (인)
타타대우상용차지회 지 회 장	차상원 (인)	(주)세움	김남일 (인)
아이에스테크지회 지 회 장	백금배 (인)	(주)동원로엑스	김영환 (인)
익산지역금속지회 서연인테크 분회장	이영철 (인)		
익산지역금속지회 일진머티리얼즈분회장	김두룡 (인)		
세움지회 지 회 장	고병현 (인)		
현대모비스 호남물류 지회장	김경환 (인)		